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66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정성국·박수영·이인선

곽규택 · 이헌승 · 조경태

김용태 · 조정훈 · 서천호

최보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자료로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대학의 장이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
- 제64조제1항 중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
 - 2.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의2 및 제 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자		
	료로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대		
	학의 장이 평가 위원을 외부에		
	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외부 위		
	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		
	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		
제64조(벌칙) ① <u>제34조제9항을</u>	제64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u>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u>느 하나에 해당하는</u>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		
	<u>하거나 유포한 자</u>		
<u><신 설></u>	2.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		
	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		

	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
	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
	리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